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2. 件 名 :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 및 運用管理 條例中
改正改條例案
3. 請 願 要 旨 : 別 添 參 照
4. 檢 討 意 見 : 別 添 參 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6 年 6月 17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鎬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及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6年 6月 17日

文教社會 委員會

專 門 委 員

大田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개정 조례안은 199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提案理由

1996년 2월 21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따라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회계관리 담당자에 대한 관직을 지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정함. (안 제8조)

3. 檢討意見

- 본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18일 조례 제326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2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996년 2월 21일 규칙 제2044호로 시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됨에 따라 본조례 제8조(회계관리) 제1항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된것을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